

<p>1. 산업용 필름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물품의 결속, 분리,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(PE)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 및 비닐·랩</p>	
<p>2. 생활용품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폴리프로필렌(PP) 재질의 소비재 중 20종 제품</p> <p>가. 주방용품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의 기구, 제5호의 용기·포장 및 이들 기구와 용기·포장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밀폐·보관 용기(공기, 대접, 접시, 식판, 반찬통, 쌀통을 포함한다) 2) 물병·물통 3) 컵(텀블러, 계량컵, 컵 홀더를 포함한다) 4) 양념통 5) 도마 6) 도시락 용기 7) 수저통 8) 식기 건조대 <p>나. 위생용품(목욕, 세탁, 청소, 이미용에 사용</p>	<p>□ 주방용품</p>    <p>□ 위생용품</p>   

	<p>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비누통·비누 받침 2) 칫솔꽂이 3) 바가지 4) 목욕 의자 5) 휴지통 6) 쓰레받기 7) 빨래판 8) 빨래 바구니 <p>다. 기타용품(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화분(받침대를 포함한다) 2) 옷걸이 3) 바구니 4) 수납장(서랍장, 캐비닛, 수납 박스, 선반, 책꽂이, 구급함, 공구함, 약통을 포함한다) 	 <p>□ 기타용품</p>   
<p>3. 교체용 정수기 필터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교체용 정수기(淨水器) 필터(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에 한정한다)</p>	